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4,424,409	7,032,732
일반회계	197,636,498	5,929,095
특별회계	36,787,911	1,103,637
공기업특별회계	20,074,122	602,22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4,122	602,224
기타특별회계	16,713,789	501,414
수질개선 특별회계	9,878,867	296,366
주택사업 특별회계	2,664,761	79,943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87,856	23,636
자활기금 특별회계	1,261,439	37,843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50,152	25,505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51,000	25,53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67,634	11,029
기반시설 특별회계	30,211	9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1,869	65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15,67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